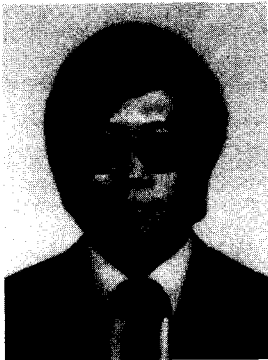


# UR의 주요 타결내용과 대응과제



郭 泰 運

<서울市立大學校 教授, 經濟學博士>

## I. UR협상의 배경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는 1986년 9월 우루과이 Puntadel Este 각료 선언에서 출범한 이래 7년만에 1993년 12월 15일 107개국 대표들이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지난 4월 21일 모로코의 말라카시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UR의 최종의정서를 채택하고 동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완전 타결되었다. UR의 타결은 그 참가국의 규모면에서나 타결내용의 범위면에서나 세계경제사상 전례없이 방대하고 포괄적이어서 앞으로 세계경제질서에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고 따라서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을 창출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이른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는 데 긴요한 과제이다.

UR의 추진배경을 보면 우선 GATT체제의 기본이념인 무역자유화에서 찾을 수 있다. GATT는 1948년 발족이후 7차례의 포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 한 바있다. 즉 1960년대에 딜론 라운드, 케네디라운드 등 6차례에 걸친 협상으로 관세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며 1973-1979년 중에는 이른바 동경라운드로 불리는 제7차 GATT무역자유화 협상을 추진하여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단행하였다. 특히 동경라운드에서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이외에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기술장벽, 쇠고기, 낙농품 등 일부농산물까지 포괄하여 광범위한 무역협상을 했던 것이 종래의 무역협상과 대조를 이룬다. 이번의 UR도 전후 GATT의 이러한 끊임없는 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할 것이다.

두번째로 동경라운드 이후 1980년대의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1980년대에 들어와 세계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기침체, 고율의 실업, 개도국의 외채위기, 미국의 만성적인 국

### ■ 目 次 ■

I. UR협상의 배경

II. UR의 주요타결내용과 영향

III. 대응과제

제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등으로 극심한 불균형을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국은 거시경제 정책 및 경제구조 조정정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며 국제무역질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번째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GATT의 다자주의의 약화를 들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고율의 실업과 경기침체의 장기화, 국제수지적자에 직면한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확대하는 추세를 보였는 바 그것은 종래의 보호무역주의와 성격이 현저하게 다른 것이어서 신보호무역주의라 불리웠다. 즉 자국의 유치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했던 개도국의 그것과는 달리 선진국이 주도가 되어 자국의 사양산업의 보호에 주목적을 두고 한국 등 이른바 신흥공업국들(NICs)을 대상으로 했던 점, 종래의 것이 주로 관세수단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등 주로 비관세장벽에 의존했다는 점, 그리고 GATT를 통한 다자간 협상보다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 EC의 반덤핑 등 쌍무적(즉 2국간) 조치에 의존했던 점 등이 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체제의 약화를 초래하여 국제교역질서를 위협함에 따라 다자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통한 GATT체제의 안정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세계교역질서의 개편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동경라운드가 끝난 후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 농산물과 서비스교역을 자유화하고 지적소유권보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교역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UR은 당연히 그 추진이 순

조롭지 못하였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협상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 준비과정에만 꼬박 4년이 걸렸던 것이다. 실제로 동경라운드 이후 새로운 라운드의 개최를 논의한 것은 이미 1983년 5월의 선진국 경제정상회담에서였으며 그로부터 1986년 9월의 GATT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즉 UR로 명명되기까지 선진국상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개도국상호간의 이해조정에 장기간의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엔 동의를 하면서도 협상의제에 대해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권이 들고나온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소유권보호, 농산물 개방문제 등을 새로운 의제로 포함시키는데 있어서는 선진국간의 이해격차도 컸었지만 개도국권도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키는데 소극적인 찬성을 보인 온건국(싱가포르, 한국 등 NICs)과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강경국(브라질, 인도 등)으로 양분되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도국들이 경제력의 격차에 따라 협상의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표 1 참조)

그러면 UR은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첫째, 자유무역의 확대와 GATT체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UR은 신보호주의의 대두로 자유무역원칙이 후퇴하고 GATT체제가 동요되던 시기에 시작하여 이번에 타결됨으로써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기반을 확충하여 무한 경쟁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둘째, 그 타결내용이 유래없이 광범위하다. 종전의 무역협상에서는 동경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이 일부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관세인하가 그 초점이었었다. 그러나 UR에서는 관세이외에도 14개의 의제가 더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종전에는 GATT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 섬유무역자유화 등을 포함시킨 것은 세계교역사상 전례없는 커다란 변화이다.

세제, 이번 협상에서는 GATT자체가 협상의제로 등장한 것이다. 즉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권, GATT조문 등을 협상의제로 삼고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을 새로이 설립하게 된 것은 세계무역질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중요한 변화이다.

끝으로 협상참여국의 규모와 각국의 새로운 경제구조이다. 즉 UR에는 107개국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들 나라들은 미국, EC와 일본, NICs, 기타개도국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 서로 다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UR의 타결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표 1〉

U R 협상 주요 경과

• 1986. 9	-UR출범을 위한 우루과이 Punta del Este 각료선언 채택 -1990. 12월말까지 타결기로 하고 협상 개시
• 1988. 12	-몬트리올 중간평가 회의 -협상의 진전과 쟁점을 평가하고 향후 협상방향 설정
• 1990. 12	-UR종결을 위한 브뤼셀 각료회의 -미국, EC간 농산물 보조금 감축문제 의견대립으로 당초시한내의 타결 실패
• 1991. 4	-협상시한을 연장하고 협상재개 -중전 15개분야 협상의제를 7개그룹으로 통합하여 협상의 효율적 추진 도모  *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열대산품 → 시장접근그룹으로 통합 섬유 → 섬유 농산물 → 농산물 보조금/상계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 → 규범제정 및 투자 GATT조문, MTN협정, 무역관련 투자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GATT 기능강화 → 제도분야 서비스 → 서비스
• 1991. 12	-던켈 사무총장 직권으로 최종협정안 제시 -그러나 각국의 협정내용 수정요구로 타결 실패 -다만, '91년 이후 UR협상의 기초문서로 사용키로 합의하여 이후 이를 기초로 협상 진행
• 1993. 12. 15	-협상 타결(UR협상 결과를 수록한 최종의정서 및 부속협정문에 대한 협정대표간의 가서명) -미결사항 및 최종문안에 대한 협상 계속
• 1994. 2. 15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 1994. 4. 12	-모로코 말라카시, 각료회의, UR최종협정문 채택

## II. UR의 주요타결내용과 영향

### 1. 관 세

#### 가. 의의

관세인하는 GATT의 다자간협상의 주된 목표가 되어왔다. 앞서 지적한대로 GATT는 동경라운드에 이르기까지 7차례의 관세인하 협상을 통해 이미 선진국의 공산품관세를 대폭 인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대전 후 평균 40%에 달하던 세계전체의 평균관세율은 5%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지난 30년동안의 GATT의 부단한 관세인하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UR의 관세협상은 아직도 잔존하는 관세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섬유·신발 등 특정분야의 고관세를 완화하는 것이다. 즉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와 있지만 섬유, 의류, 신발 등 특정품목의 관세는 평균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아주 높은 수준에 있어 이를 개도국의 대신진국 수출의 중요한 장벽으로 되어 있었다.(표 2참조)

〈표 2〉 주요 선진국의 고관세 현황

품 목	미 국	일 본	E C	호 주
전품목	3.4	3.1	2.5	8.3
신 발	9.5	12.5	6.5	27.9
의 류	18.1	10.0	7.3	35.6
섬 유	12.1	7.1	5.3	11.3

자료 : The World Bank, *The Uruguay Round*, 1987., 김기홍,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한국, 한울, 1991에서 재인용

둘째, 가공단계별 관세율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관세구조를 보면 가공도가 높을 수록 더 높은 관세율이 높은 이른바 관세율 에스컬레이션현상(Tariff Escalation)을 보이고 있어 개도국의 완제품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표 3 참조)

〈표 3〉 선진국의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

구 분	가 중 평 균	단 순 평 균
전(全)공산품	4.9	6.5
원료	0.4	1.7
반제품	4.1	6.2
완제품	6.9	7.4

자료 : The World Bank, *The Uruguay Round*, 1987. 〈표 2〉 김기홍의 책에서 재인용

셋째, 모든 가맹국간의 관세양허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품목의 관세율을 낮추거나 또는 관세율을 현재수준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타결내용

##### 1) 관세인하

관세인하는 관세무세화와 관세조화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관세의 완전철폐를 의미하고 후자는 기본적으로 관세율격차를 해소하여 국가간 관세율구조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UR에서 철강, 건설장비, 농업기계, 의료기기, 가구, 의약품, 맥주, 증류수등 8개분야의 75개품목(HS 4단위기준)에 대해 관세무세화에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

의 경우는 이중에서 6개분야 67개품목의 무세화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관세 조화의 경우는 화학제품 196개품목(HS 10단위 기준)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0~6.5%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195품목에 대해 참여하였다. 또한 섬유 등 선진국의 고관세품목(관세율 15% 이상)에 대해서는 50% 이상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수준의 평균 1/3 이상 인하하기로 하였다.

## 2) 관세인하율

관세인하율을 보면 일본이 기준관세율 3.7%에서 1.0%로 73.0%의 가장 높은 인하율을 보였으며 미국과 EC는 각각 35.2%와 34.5%의 인하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준관세율 17.9%에서 8.1%로 54.6%의 높은 인하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4 참조) 물론 이러한 관세인하는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표 4〉 주요국의 관세인하 규모

구분	기준관세율	인하후 관세율	인하율
미 국	5.4	3.5	35.2
E C	5.8	3.8	34.5
일 본	3.7	1.0	73.0
카 나 다	8.9	4.9	44.9
인 도	72.4	32.4	55.1
베네수엘라	45.0	31.0	38.0
한 국	17.9	8.1	54.6

- 주) 1. 기준관세율은 '86. 9월의 각국 평균관세  
2. 인하후 관세율은 2004년부터 적용되는 세율(단계적 인하)

자료 : 무역협회, UR주요타결내용 및 영향에서 인용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해 관세인하를 요구한 954개품목(HS 10단위)중에서 888개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관철하였으며(표 5 참조) 우리나라의 관세인하요청이 수용된 주요국별 품목별 내용은 〈표 6〉에 요약한 바와 같다.

〈표 5〉 주요국별 관세인하 관철내용

상 대 국	요청품목수	반영품목수	반영비율(%)	요 청 품 목
미 국	277	277	100	섬유, 신발, 화학제품
E C	23	23	100	신발, 양식기
일 본	138	124	90	섬유, 수산물, 가죽제품
카 나 다	135	135	100	섬유, 가죽제품
호 주	64	22	34	섬유, 신발
스 웨 덴	36	36	100	섬유, 신발, 플라스틱
기 타 국	281	271	96	섬유, 신발, 철강
계	954	888	93	

자료 : 무역협회, UR주요 타결 내용 및 영향에서 인용

[표 6]

## 관세인하 요청품목중 수용된 주요품목

협상국	주요품목명	인하관세율(%)
미 국	핸드백	29→16
	가방(플라스틱제)	20→13~17
	마이크로오븐	4→2
	합성필라멘트 직물	40.5→20
	티셔츠(편물)	17→2.6
	카스테레오	8.0→4.4
	가위	20.2→6
E C	신발	20→17
	양식기(스푼, 포크등)	17→10
일 본	여행용 가방(플라스틱제, 섬유소재)	10→8
	의류(자켓, 잠바류)	12.5→10

자료 : 무역협회, UR주요타결내용 및 영향에서 인용

#### 다. 영향

관세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관세인하는 우리나라의 수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므로 수출증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94년의 평균관세율이 7.9%로 2,004년까지의 인하수준인 8.1%보다 낮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으로 추가적인 관세인하의 부담은 없는 것이다. 특히 맥주와 위스키 등에 대한 관세인하는 우리나라가 이번 UR협상에서 동품목의 관세양허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UR타결에 따른 관세인하의무는 없다.

## 2. 반덤핑

### 가. 의의

반덤핑(Anti-Dumping)이란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으로써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때 덤핑에 대한 제소,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판정 등 까다로운 문제가 수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섬유, 신발,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대미수출에 있어서 덤핑제소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덤핑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우회하여 선진국으로 침투하는 이른바 우회덤핑의 규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선진국의 경우 덤핑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는 최근 무역분쟁의 중요한 항목의 하나가 되어 왔던 바 이번 UR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명료한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가능한 한 반덤핑관세부과를 억제하고 그것의 남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GATT의 반덤핑조항을 개편하고자 하였으며 반면 미국, 선진국들은 우회 또는 위장덤핑의 방지를 강화하는 데 그 개정의 방향을 두고 있었다.

### 나. 타결내용

첫째, 덤핑마진 산정방법의 개선이다. 현행 덤핑

판정에서는 국내평균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것은 제외하고 낮은 것만 골라서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보면 덤핑이 아닌 경우에도 덤핑판정을 받을 수 있는 모순이 있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모순을 시정하였다.

둘째, 제품의 구성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 판매비와 이윤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판매비나 이윤이 일정수준이하이면 자의적으로 판매비(원가의 10%)와 이윤(원가 및 비용의 8%)을 정하여 덤핑판정을 하던 불합리성을 제거하였다.

셋째, 우회덤핑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합법화 하였다. 즉 이미 덤핑판정을 받아 반덤핑관세를 물게 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나라에서 직접생산하여 판매하는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를 합법화하였다.

넷째, 소멸조항(Sunset Clause)을 명문화 하였다. 반덤핑관세는 부과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이의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을 통하여 덤핑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반덤핑관세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다. 영향

이와 같이 반덤핑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해 정함으로써 선진국의 자의적인 덤핑판정의 소지를 줄이고 또 덤핑의 남발을 억제하여 덤핑을 둘러싼 국제적 무역분쟁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그동안 빈번한 덤핑규제에 걸렸던 철강,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의 수출신장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 3. 보조금 · 상계관세

#### 가. 의의

보조금이란 정부가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을 말하는데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나누어진다. 보조금의 지급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므로 국제무역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 때문에 피해를 본 나라는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상계관세라 부른다. 이 상계관세는 그 성격이 반덤핑관세와 유사하며 GATT에서 보조금의 정의,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었다.

#### 나. 타결내용

##### 1) 보조금의 유형설정

그동안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단순하게 구분하였던 보조금의 유형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명료하게 구분하였다. 금지보조금은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말하는데 이것은 협정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과 국산품사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금지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규모나 해당국의 피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자체로서 보복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상계가능보조금은 직접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은 주지 않지만 보조금지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다른 나라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손상을 주는 보조금을 말하며 이것은 대응조치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허용보조금이란 법률상 모든 산업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거나 또는 선별성, 자의성이 없는 보조금을 말하는데 이런 보조금은 허용하기로 하였다.(예 : 연구개발투자지원) 단 회원국은 허용보조금의 지급목록을 매

년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3년마다 재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 2) 상계관세부과

보조금이 지급된 수출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1년이내의 조사를 거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되 단 상계관세는 지급된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3) 개도국우대조항

소득수준 1,000달러 미만인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보조금의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개도국에 대해서는 본협정이 종결된 후 8년이내에 그것을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이라 하더라도 특정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2년간 3.25%를 넘는 경우에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보조금을 2년이내에 철폐하도록 하였다.

## 다. 영향

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한 것은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수출 및 산업지원제도의 수정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무역금융, 중소기업지원제도 등이 앞으로 폐지 또는 수정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 4. 긴급수입 제한 조치

### 가. 의의

긴급수입 제한조치란(Safeguard) 특정상품의 수입증대로 수입국의 동종상품 생산업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 수입국은 동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GATT 제19조에 명문화된 규정을 말한다. 긴급수입 제한조치는 그 발동요건, 절차, 보상, 보복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특히 최근에는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차별적, 선별적 긴급제한조치의 발동이 빈번하여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질서유지협정(OMA :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s), 수출자율규제(VER) 등이 그러한 조치인데 이러한 조치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수출량을 통제하는 조치로 소위 회색무역규제조치(grey area measures)라 불리는 것들로서 GATT에 그 근거규정이 불확실했었다.

### 나. 타결내용

1) 무차별원칙의 준수, 단 선별적용의 예외적 인정  
긴급수입 제한조치는 모든 수출국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수량제한의 경우 최근 3년동안의 평균수입량을 보장하여 수출의 급격한 감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단 예외적으로 특정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총수입량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위원회의 감시하에 수출국과 협의를 거쳐서 선별적으로 수입량을 더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회색무역 규제조치의 철폐

앞에서 지적한 OMA, VER 등 회색무역규제조치들의 적용을 금지하였으며 이미 발동중인 조치들은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철폐계획을 GATT에 제출하고 4년이내에 완전 철폐해야 한다.

3)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발동기간 및 재발동 금지기간의 규정

동조치의 발동기간은 8년을 넘지 못하며 동일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기존의 조치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재발동할 수 있으며 그것도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4) 기존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조치를 발동한 후 8년이내에 또는 협정이 발효된 후 5년 이내 2가지중에서 낮은 기간이내에 철폐하도록 하였다.

#### 다. 영향

이번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발동요건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선진국의 빈번한 회색조치의 대상국이 되어 수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나라로 볼 때 수출여건의 개선 등으로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5. 서비스

### 가. 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은 이번 UR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이다. GATT는 그동안 재화측 눈에 보이는 무역의 자유화에 박차를 가해 왔으나 이번 UR에서는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즉 서비스의 무역까지 협상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여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일대 변혁을 이루게 된 것이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 UR에서 처음이 아니며 실제로 1970년 후반 동경라운드가 종료되면서 이미 선진국들간에 논의가 되고 있었다. 그것은 세계무역중에서 서비스교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미국의 경우는 특히 서비스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발전단계가 뒤떨어진 개도국의 경우는 서비스산업이 현격한 비교열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곧 그들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크게 반발하였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현격한 의견격차로 인해 실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무역을 규율하게 될 국제적 규범을 설정하는데 합의를 도출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나. 타결내용

1) 최혜국 대우원칙을 도입하여 모든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다른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였다. 물론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최혜국 대우의 예외를 요청하여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특정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원칙적용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도입하여 다른 나라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모든 서비스분야의 시장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을 협상 주기로 한 양허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국의 양허계획서상에 각국이 자유화하는 업종은 포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하여 기재하지 않은 분야는 자유화 의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반면 자유화를 약속하였지만 그 분야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채택하여 기재된 제한 조치내용이외에는 다른 나라의 서비스공급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4) 이번 UR협상에서 자유화된 서비스분야의 업종은 GATT사무국의 분류에 따라 사업서비스(전문직서비스, 컴퓨터관련, 연구개발, 임대부동산, 광고 및 컨설팅 등 기타서비스 포함), 통신(시청각서비스포함),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사회, 관광, 문화체육, 운송 등 11개서비스분야의 155개업종에 이르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주요국의 서비스업종 개방약속 비교

부 문	한 국	미 국	E C	일 본	카나다	중 국	태 국
사업서비스(46)	31	34	41	32	35	21	19
통신서비스(24)	9	15	13	15	8	—	5
건설(5)	5	5	5	5	5	5	3
유통(5)	4	4	4	4	5	—	1
교육(5)	—	2	4	4	—	—	—
환경(4)	3	4	3	4	4	—	—
금융(17)	15	16	16	16	16	12	13
보건사회(4)	—	4	2	2	—	—	—
관광(4)	3	4	2	3	2	1	2
문화체육(5)	—	4	3	4	—	—	1
운송(35)	8	15	17	16	20	7	11
계 (155)	78	107	110	105	95	46	55

자료 : 무역협회, UR주요타결내용 및 영향에서 인용

#### 다. 영향

우리나라는 교육, 보건사회, 문화체육 등 3개분야를 제외하고 8개분야의 78개업종만 개방하기로 하였다. (표 8참조) 이러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국제화의 가속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운송, 건설분야와 같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우는 해외진출의 기대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 6. 지적재산권

### 가. 의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인격적·재산권적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인간이 두뇌를 이용하여 만든 유형·무형의 자산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를 보

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 영업비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는데 합의한 것은 서비스교역 협상과 더불어 이번 UR의 큰 성과이다.

### 나. 타결내용

이번 UR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되 이것으로 인하여 정당한 국제무역이 장애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그동안 국제협약을 통해 보호하던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신지적재산권까지 보호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물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규정하여 위조상품의 무역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타결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표 9〉에 요약한 바와 같다.

〈표 8〉

## 우리나라의 서비스 양허업종

구 분	부 문	개 방 업 종
사 업 서 비 스 (31개)	전 문 직 업 (6개)	공인회계, 세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종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정설계서비스
	컴퓨터관련 (5개)	컴퓨터설비자문, 소프트웨어시행, 데이터처리, 데이터베이스서비스, 기타 컴퓨터관련서비스
	연 구 개 발 (1개)	인문, 사회과학부문 R&D서비스
	임 대 (4개)	선박임대서비스, 항공기임대, 기타 운수장비임대, 기타 기계장비임대서비스
	기 타 (15개)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사업관리, 시술적진단, 농축산업관련 자문, 과학기술자문, 국제회의용역, 기타서비스, 어업관련자문, 사진, 포장, 광업관련자문, 장비유지 및 수선, 인쇄서비스
커 뮤 니 케 이 션 (9개)	통 신 (7개)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 정보검색, 고도팩시밀리, 전자적 데이터교환,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처리
	시 청 각 (2개)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배급, 음반제작, 배급서비스
건 설 (5개)		일반건축,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마무리공사, 기타 서비스
유 통 (4개)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즈서비스
환 경 (3개)		하수서비스, 폐기물처리, 기타서비스
금 용 (15개)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금융리스, 지급 및 송금, 지급보증,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증권인수, 금융중개, 투자신탁, 금융결제, 투자자문,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보험부수서비스
관 광 (3개)		호텔, 여행알선, 관광안내서비스
운 송 (8개)	해 운 (3개)	외항여객운송, 외항화물운송, 선박유지 및 수선서비스
	항 공	삭제
	운 송 보 조 (4개)	도로운송(1개) 화물트러킹서비스, 창고서비스, 화물운송대리, 기타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
	계	78개

자료 : 무역협회, UR주요타결내용 및 영향에서 인용

〈표 9〉 지적재산권 협정문의 주요내용

특	허	권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보호기간 확대		
상	표	권	보호기간은 7년(색채상표 인정)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도 보호		
의	장	권	보호기간 : 10년		
대	여	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음반에 대해 저작자의 허락없는 제3자 대여행위를 금지		
저	작	인	접	권	보호기간 : 50년(음반, 실연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압수된 물품은 공탁금을 내고 통관가능)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보호기간 : 창작자 사후 50년 - 표현만 보호하고 Idea 등은 보호치 않음		
지 리 적 표 시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광고금지		
영 업 비 밀			상업적 가치가 있는 비밀보호		

자료 : 무역협회, UR주요타결내용 및 영향에서 인용

다. 영향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로열티의 지급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에서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늘어나고 또 선진기술도입이 촉진될 것이므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후발개도국들의 우리기술 및 상품모방행위를 억제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이 설정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선진국의 쌍무적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농산물

가. 의의

농산물교역이 다자간협상의 의제로 등장한 것은 이번 UR의 하일라이트 중의 하나이다. 특히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EC 등 선진국에서도 큰 소요를 일으켰다. 농산물교역이 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대이후 농산물의 과잉공급과 그에 따른 무역마찰의 격화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전후 미국, EC 등 각국은 농업증산을 목표로 과도한 농산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지급억제와 농산물시장개방에 그 활로를 찾고자 한 것이 UR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나. 타결내용

1) 시장접근분야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Tariffication) 원칙을 반영하여 모든 비관세방벽을 철폐하고 국내외 가격격차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관세화란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세상당치는 국내가격에

서 국제가격을 뺀 차액을 국제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한다. 그 다음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양허한 후에 매년 동일 비율로 감축하도록 하였는데 6년간 선진국은 36%(품목별 최소 15%), 개도국은 24%(품목별 최소 10%)씩 각각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최초년도에는 국내소비량의 3%, 최종년도에는 그것의 5%를 기존 최저세율로 보장하는 최소시장접근을 인정하고 현재 3%이상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물량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현행시장접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관세화란 품목의 수입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86~88년 평균가격보다 10%이상 하락한 경우), 수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이전 3개년 평균수입 물량보다 1.5배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보조금지급

국내보조금의 경우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금의 지급은 전체보조금 총량축정치로 표시하여 매년 동일 비율로 감축하도록 하여 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씩 각각 감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출보조금의 경우는 6년간 선진국은 수출보조금관련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36%, 수출물량기준으로 21%씩 감축하고 개도국은 전자기준 24%, 후자기준 14%씩 감축하기로 하였다.

다. 영향

1) 쌀 및 기초농산물

우리나라의 경우는 쌀에 대한 특별대우를 협정문 부속서(Annex 5)에 반영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이행기간 개시 후 10차년도에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 관세화문제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관세화 유예기간중에도 최소시장접근은 허용되되 그 물량은 이행기간 초년도에 1%에서 시작하여 5차년도에 2%로 매년 0.25%씩 증량시키고 6차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2%에서 4%로 매년 0.5%씩 증량하기로 하였다. 한편 쌀이외의 기초농산물 개방내용은 <표 10>에 요약한 바와 같다.

<표 10> 14개 기초농산물 개방내용

품 목	내 용
쇠 고 기	○ 2001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 ○ 현행세율 20%를 2001년 43.6%로 인상
감 유 제 품	○ 97년 7월부터 전면 개방 ○ 99% 실링관세율 적용
돼 지 고 기	○ 97년 7월부터 전면 개방 ○ 현행세율 25%를 33%로 인상
닭 고 기	○ 97년 7월부터 전면 개방 ○ 현행세율 20%를 30%로 인상
고 추, 마 늘, 양 파, 참 깨	○ 97년 7월부터 전면 개방 ○ 실링(ceiling) 관세율 적용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 95년 전면 개방 ○ 관세화 개방(관세상당치 적용)

자료 : 무역협회, UR주요타결 내용 및 영향에서 인용

## 2) 주류산업

이번 UR의 타결은 우리나라 주정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정부미를 주류제조용으로 공급하는데 있어 주정용에 대해서는 타주류제조용보다 저가로 공급하고 있는데[주정용(소주) 15,000원, 청주·약주용 25,000원 : 각 80kg당 93년기준] 이것이 UR의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되어 저가공급이 철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우기 수입쌀의 경우 운임 보험, 관세 등을 포함할 경우 80kg당 32,000원선을 약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정부미의 저가공급이 폐지되어 수입미를 원료로 사용할 때 원가부담이 커져 주류산업의 채산성과 경영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 8. 기타

### 가. 원산지규정

GATT최혜국대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수량규제,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의 구체화, 통일원산지규정 마련에 대한 일정 및 방법의 규정, 동규정적용시 준수해야 할 제원칙 규정, 동규정의 개정시 준거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원산지 협정상의 과도기간중의 규정내용과 일치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나. 정부조달협정

종전에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방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부조달협정대상을 확대하고 협정의 적용범위도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건설까지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개방하한선은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 각각 1억 3천만원, 건설 50억 이상의 정부조달이며 지방정부기관(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9개도)

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 각각 2억원, 건설 150억 이상의 정부조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한전, 한국통신 등 23개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조달은 제외되고 물품 4억 5천만원, 건설 150억 이상의 정부조달에 동협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조달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관납 등으로 납품을 해온 국내기업들은 외국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반면 그동안 우리기업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던 미국(950억달러), EC(1,500억달러), 일본(400억달러) 등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 다.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을 관장하는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I : Dispute Settlement Body)를 신설하고 기존 GATT협정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분쟁절차를 통합하여 단일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세계무역의 다자주의원칙을 준수하고 쌍무주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마련은 미국, EC 등 경제대국의 일방적인 보복수단(예 : 미통상법 301조)을 통한 쌍무적 통상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 WTO의 설립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는 UR이 종결된 후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을 다루어 나가기 위해 GATT를 보완하는 기구로 창설된 것이다. 즉 UR이 타결됨에 따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협정 등 종전의 GATT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던 새로운 분야가 대폭 국제교역협상의 의제로 다루어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GATT의 경우 협상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협상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 국제무역기

구의 설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WTO의 설립은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강화, 국제무역규범의 적용범위의 확대(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국제무역규범 적용의 일관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WTO협정의 구성내용은 <표 11>에 요약한 바와 같다.

<표 11>

WTO협정의 구성

부속서 1A	UR상품교역협정
부속서 1B	서비스교역일반협정
부속서 1C	지적재산권협정
부속서 2	통합분쟁해결절차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부속서 4	별도 복수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 민간항공협정, 낙농협정, 우육협정)

자료 : 무역협회, UR주요타결내용 및 영향에서 인용

### Ⅲ. 대응과제

UR의 이러한 타결은 전후 세계경제사에 있어서 실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일대 변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UR의 타결은 그동안 고조되어왔던 보호무역주의의 퇴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가져와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촉진과 아울러 공정무역의 관행을 더욱더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그에 따라 선진국의 일방적 또는 쌍무적 시장개방압력의 증대에 따른 통상마찰도 완화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동안 크게 동요를 보여왔던 다자주의의 회복을 통해 GATT체제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UR타결내용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철폐와 시장의 개방 및 새로운 무역규범의 설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가 UR이후에 얼마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UR타결의 일대 변혁을 맞이한 우리로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긴요하다.

우선 정부정책당국자는 정책의 기초를 자유경쟁 시대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즉 나라안팎에서 일어날 무한경쟁속에서 경쟁시대에 배치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하여 우리기업들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조금지급 등 각종의 기업지원제도가 전면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기업의 단기적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에 대한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은 새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에 주력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기업 스스로 역경을 헤쳐가는 지혜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를 가일층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기업이나 정부가 UR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소비자들에게 도덕적설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

비자는 그 생리상 질 좋은 상품에게 손이 가게 마련인데 그러한 소비자의 생리를 외면한 채 예를 들어 “우리것을 써야만 나라가 잘된다”는 식의 도덕적 설득은 효험이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캠페인이나 설득이 아니라 상품의 질로서 정면대결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경쟁을 극복할 수 있다.

燥性者火熾，遇物則焚。寡恩者冰清，逢物必殺，凝帶固執者，如死水腐木，生機已絕。俱難建功業而延福祉。

성질이 조금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태워 버리고, 은덕이 적은 사람은 차가운 얼음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죽여 버리며, 딱 붙어 고집스런 사람은 껍어 있는 물, 썩은 나무 같아서, 생생한 활동력이 끊어져 버리는 법이니, 이들은 모두 공적을 세우고 복을 늘리기 어려운 법이다.

— 菜根譚중에서 —